

제42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8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0)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3)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6)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7707)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5)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4)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4)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7)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6)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6)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1)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9)
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7)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18)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357)
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4)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3)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5)
39.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
40.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
41. 마을기업 지원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9)
4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3)
43.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1)
4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0)
4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9)
46.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1)
4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4)
4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7)
49.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1)
5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7)
5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9)
52.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1)
5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5)
5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9)
5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0)
5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1)
5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3)
5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5)
5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1)
6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3)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1)
6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6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6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6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6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70.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현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

상정된 안건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0)	7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3)	7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6)	7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7707)	7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5)	7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4)	7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6)	8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4)	8
9.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7)	8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6)	35
1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6)	35
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39
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39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39
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39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39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39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39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39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39
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40
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40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40
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40
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40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40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40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40
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1)	65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65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65
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9)	65
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7)	65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18)	66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357)	66
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4)	66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3)	66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5)	66
39.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	66
40.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	66
41. 마을기업 지원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9)	66
4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3) ..	66
43.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1)	66
4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0) ..	66
4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9) ..	66
46.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1)	66
4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4)	66
4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7)	66
49.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1)	66
5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7)	66
5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09)	66
52.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11)	66
5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5)	66
5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9)	66
5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0)	66
5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1)	66
5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13)	66
5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105)	66
5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1)	66
6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3)	66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67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1)	67
6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67
6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67
6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67
6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67
6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67
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67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67
70.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현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67

(10시04분 개의)

○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인사혁신처,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70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상 주제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일부를 심사하겠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0)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3)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6)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7707)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5)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4)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6)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4)
9.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7)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까지 총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으로 법안소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와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발의가 계셨고요. 정부 예산안·예산요구서 반영 의무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상품권 할인율 상향·명시, 가맹점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등 8개 사항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2024년 9월 5일 저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만 상품권 할인율 상향·명시, 정책발행 근거 명시, 가맹점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은 대안 신설 이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제안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목적 조문 보완 사항입니다.

목적 조문에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외 자금 유출 방지효과 등을 통해서 지역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 안에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 조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조문에도 포함하고 계신데요.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인 차원의 목표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의무 규정에 포함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특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포한 날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행안위 대안을 보시면 지역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들어간 상태로 지난해 9월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쪽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사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현행법상에는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재정적 지원 의무화를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주체 의무화 사항에 자자체 중에서 시군·자치구는 의무화 조항에서 배제해 달라는 박정현 의원님 안이 있으신데요. 이는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서 결정하실지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행안위 대안상에는 예외 없이 포함하는 사항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지원 내용 대통령령 위임 삭제 규정도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원 내용을 협소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시고, 저희 행안위 대안에서는 대통령령 위임을 삭제하는 걸로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통과되는 것 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비지원 예산의 정부 예산안 또는 행안부 예산요구서 반영 의무화 사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행안부의 예산요구서 반영 의무, 정부 예산안 반영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조항입니다.

이 또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과 행안부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논의하시면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형식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좀 감안해서 행안부장관이 자자체로부터 신청받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고요.

국비지원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택할 수도 있고 행안부 요구서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할 경우에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조금 더 높고요.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는 좀 낮아지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면 행안부의 이외의 재정 사업의 지출한도가 좀 축소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할 경우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수요는 같은 법에 따른 행안부 예산요구 지출한도에서 제한하는 특례를 규정하시면 그 문제는 좀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근거 신설 여부 건입니다.

18쪽입니다.

이 건은 2023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율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용례나 시행일도 법률 심의하셔서 통과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 실무적으로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행안부장관·지자체장 행정계획 등 수립 의무화 사항입니다.

행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종 행정계획 또는 활성화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항입니다.

행안부장관, 5년의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그 결과를 국회 예산심의에 연계할 수 있도록 국회 정기회 전에 국회 제출 의무화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거여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26쪽, 지자체장에게 활성화정책 또는 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인데요.

어떤 의원님은 활성화정책을 하시고 또 일부 의원님은 발행계획 수립 의무를 하시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발행계획을 의무화하는 경우에 3년간의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예측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과 활성화정책 안에 발행계획을 좀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정책 수립으로 채택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안이 되겠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2024년 9월 행안위에서 통과된 대안에서도 동일 사항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의무화 사항입니다.

행안부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의무화시키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일부 의원님은 3년마다 하고 있고 또 박정현 의원님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공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3년으로 할 것이냐 3년 이내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 3년 이내의 범위로 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종류별로 기간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안위 대안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율 상향·명시 조항입니다.

지금 사항부터는 작년에 행안위에서 통과된 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들로 신규 제안 건들입니다.

먼저 판매 할인율 상향 건인데 현재 판매 할인율이 현행 10%인데 10% 또는 15%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할인율을 상향할수록 상품권 불법 환전 유인이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하고 지자체 발행 비용상 부담이 발생해서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는 역효과도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0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발행 및 사용 근거 명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각종 지출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지급하는 이른바 정책발행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보수·임금 또는 지방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고요. 여기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으로 특정 지출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 규정, 44쪽의 참고 사항을 보시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발행의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법률에 규정하면 이런 조례 없이도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의 정책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수진·박희승 의원님 안에 포함돼 있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비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후생복지 경비·수당도 포함될 수 있어서 지출 유형별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지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출 유형을 상이하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행과 같이 구체적인 지급 근거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정훈 의원님 안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인력 규모, 예산 규모, 자금 사정, 해당 지역의 상품권 유통 여부 및 발행량 등 개별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경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좀 저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을 하려는 조항입니다.

가맹점의 경영을 지원해서 지역상품상품권 유통을 활성화시키자는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맹점에 대한 직접적 지원 외에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도 마련돼 있고 예산안에 반영 의무화까지 시키는 그런 간접적 형태의 지원 조항을 마련할 경우에, 이렇게 직접적 지원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가맹점에 대한 중복 지원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3쪽의 목적 조문 보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드리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입장을 좀 바꾼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박정현 의원안이라든지 행정안전부가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반대의견을 낸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시군구를 굳이 제외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고요. 또 대통령령 위임을 삭제하는 데도 동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보시면 국비지원 예산의 정부 예산안, 행안부 예산요구서 반영 의무화에 있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정부 예산안 반영 의무화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제약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정현 의원 방식에 동의하되 저희는 행안부 예산요구서 반영 의무화로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감액 권한을 부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한테 감액 권한을, 조정 권한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한도 제외 규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재정 당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반영 여부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근거는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25쪽의 행안부장관하고 지자체장 행정계획 수립 의무화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동의드리고요. 기본계획은 국가가 수립하고 다만 시행계획까지도 행안부가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단위 시행계획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 뒤에 나오는 활성화 계획까지도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계획·종합계획은 현재 5년 단위이기는 한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변동 사항이 있으니까 3년 주기로 해 주셔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의무화도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하고 3년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술적·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령으로 안 해 주시고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크게 쟁점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7쪽 보시면 이번에 새로 도입 제안을 해 주신 판매 할인율 상향·명시인데요.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저희도 10% 이상으로 갈 때는 지자체 재정 부담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부정유통에 대한 유인이 좀 커질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41쪽의 정책발행 및 사용 근거 명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수 없는 행위만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여건에 맞게끔 조례로서 활성화정책을 하고 지방에서 만약에 시행계획 같은 걸 하면 여러 가지 사용 관련된 조례를 잘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방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43쪽의 공공기관 등 구매·사용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현행 공공기관 예산 운영의 자율

성을 저해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것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공공기관 구매 활성화는 공공기관 평가지침 같은 데 넣는다거나 지자체가 해당 지역 공공기관과 MOU 같은 거를 체결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활성화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도 소상공인, 이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거는, 보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지원보다는 굳이 현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봐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검토 가부터 아가 있는데 가 나 다 라 마,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동의를 하신 거고요. 새롭게 올라온 바 사 아, 세 가지 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한다, 대체적으로 비동의, 재고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터 마항은 지난번 법안소위 그리고 전체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끓어서 한 번에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사·아 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나누어서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나 다 라 마,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새 정부가 들어서 차관님도 바뀌고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우리 법령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고유업무 사항인데 자치권을 굉장히 침해할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걸 의무화하는 거는 정부의 재정에 대한 그런 고유권한이 이 법에 대해서 제재가 되고 입법에 의해서 강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이 침해가 되고, 지난 정부에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다 올라오면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 해에 적당한 부분을 담아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무방한 일인데 이렇게 찬성 쪽으로 확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고요.

특히 차관님, 혹시 대도시, 중소도시, 인구소멸지역, 아주 정말 소멸지역 이렇게 실태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이나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육성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해 보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압니다. 행안부에 이 실태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 보자, 자료 내놓으라 하니까 없던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그 지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여러 국내 유수, 유명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상품권에 대한 효과 분석 자료는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어서, 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KDI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조세연구원에서는 중립적으로 보고 또 예산 투입보다는 효과가 적다 이런 분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법안에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된다면 척실하게 그런 효과 검증 또 문제점 같은 걸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저는 지방정부 측면에서 항상 입법을 고려하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서도 경상북도는 굉장히 많은 액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가치에 위배될 정도의 틀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이달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그런데 차관님께서 이게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효과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효과가 적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시도별 부정유통을 조사하고 단속을 행안부에서 하셨는데 한 45% 정도, 271건 중에 한 121건의 부정수취, 불법환전이 발견이 된 사례가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 조사를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한 바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입장을 바꿔 가지고 적극 이렇게, 거기서 조정 권한은 있으니까 의무규정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할 때 아까 이달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나 특히 부정유통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혼란해지는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지금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부정유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상품권 발행 지원 업무를 결과적으로는 해 오지 않았습니까, 추경에도 반영이 됐고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증액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추경안에서 6000억 통과될 때도요 여야 의원님들 공히 부정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지적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전담 TF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시도, 시군구와 협력해서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걸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경기진작 효과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크다 작다 논란이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는 다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투입된 자원에 대비한 그런 효과를 지적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추경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동안 우려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조사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게 좀 뒤따랐더라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

나,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되면 더 책임감을 갖고 그런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저는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소비쿠폰 발행하고 또 지역사랑상품권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서민생활 보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하는 이런 건데 저는 이게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부 예산편성권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렇게 굳이 구분해 가지고 한다면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다 국가, 정부로 이렇게 보는 그런 통념이 강한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전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경제주의라는 이런 미명하에 그냥 방치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실업률이 또 높아지고 경제가 IMF 때보다 더 나쁘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진작을 노려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인데, 그거에 따라서 국가에도 일정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헌법 위배나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성권 위원** 이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는 지역균형발전 또 지방소멸 완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법안의 가장 핵심은 여러 가지 개정 내용이 있지만 임의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 놨지만 지방의 사정에 따라 지방의 재정 형편은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강제로 해 놨을 때 지방자치권에 침해도 될 뿐만 아니고 지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원래 정부에서 편성할 때는 매칭 비율을 중앙,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을 서울은 7 대 3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들은 8 대 2로 했다가 많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낸 게 제가 알기로는 2.5 대 7.5 그다음에 9 대 1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방의 재정 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건데, 이렇게 돼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지방의 자치사무에 대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고 또 지방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고 특히 또 할인율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지방정부에는 부담이 또 같이 가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해도 원래 입법 취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좀 의문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기존의 입장은 임의규정으로 있다가 강제규정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부터 마항까지 주제별로 말씀 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부터 마항이 아니라 바·사 항 다 통틀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

○**박수민 위원** 저는 가항의 목적 조문 보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하고 다른 예산편성에 의무 조항을 넣는 건데 이거는 행정부·입법부 간의 편성권 침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부처별로도 예산편성 업무가 있고 법률집행 업무가 있는데 2개가 충돌이 됩니다.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의무 조항을 자꾸 넣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의무지출이 되고 부처 지출한도 내에서 경직성 경비가 생기는 거고 또 부처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직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항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예산편성권에서 다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무력화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모범적으로 법률체계를 유지·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자꾸 예산 의무 반영 조항을 하게 되면 저희 스스로 저희 권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여야 한다, 하지만 결국 예산편성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예산편성안은 국회 의결이기 때문에 법률안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또 뭐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 자꾸 의무 조항을 이렇게 넣는 것은 이것을 좀 더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심정적인 지원의 표시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 국회 입법의 권위만 떨어지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저는 반대고요.

라하고 마는 이게 하나의 세트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계획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 효과성 분석이 포함된 거지요?

차관님, 실태조사에 효과성 분석이 포함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우려면, 이게 신규 계획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면 효과성을 분석을 해야 계획이 서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하라고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 파악해서 첫 번째 계획 만들 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계획 세우고 집행하고 성과 분석하고 환류하고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라항에 있어서 행안부가 하기보다는 지자체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여기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박수민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종합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수립할 때 말씀하신 평가라든지 기준에 있던 것도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5년 단위를 만들고 1년 단위 계획이나 세부 실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정에 맞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는 겁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행안부가 적절히, 5년짜리는 행안부가 하고 1년짜리는 지자체가 하고 역할 분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라하고 마하고 주기가 맞아야 돼요. 계획, 집행, 분석, 환류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수민 위원** 그러면 쓰면, 그리고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 지원금이든 지역사랑상품권이든 단발성으로 효과성 분석이 연구소 연구원들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계속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분석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같을 수가 없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특정 지역에 몰아주면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해 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을 급히 중단시켜야 됩니다. 지역균형 발전하고 인구소멸지역을 돋겠다면 수도권에서 일단 이거를 빨리 끊어야 돼요. 이거를 끊어 내는 계획은 행안부가 세워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그 틀 내에서 어떻게 할지는 지자체가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라항하고 마항은 주기를 맞춰야 되고, 1년 단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마항을 1년 단위로 해서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을 하든지. 그런데 효과성 분석, 성과 분석은 행안부가 하는 게 맞아요.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해서 수도권을 끊어 내고 지방균형발전과 소멸지역을 더 돋겠다면…… 수도권, 지자체가 스스로 못 끊어 낼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전국적 차원에서 성과 분석을 서드파티, 객관적으로 계속 해 주고 그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5년 단위 계획 세우고 1년 단위 세부계획 지자체가 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만 매년 실태 분석과 효과성 분석을 행안부가 해서 환류를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어져요,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라항과 마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 두고, 바 사안은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초기 진행에 맞춰서 이렇게……

○**소위원장 윤건영** 아닙니다. 바 사안까지 쭉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전체를 다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요.

○**박수민 위원** 바 사안은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모경종 위원님.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한마디로 강행규정하고 재정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문언이 과연 다른 법에는 전혀 없는 것인가?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있다면, 그게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그런 법조문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몇 개만 찾았어,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된 법안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강행규정이 있더라도 과연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얼마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

정적 지원을 필요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실태조사에 의해서 현재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재정적 지원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완벽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많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법뿐만 아니라 구강보건법 이런 법안에도 ‘정부는 구강 건강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언이 되어 있는 법안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규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바항에 대해서 불법환전 그리고 지자체의 발행비용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현행 안에서 15% 이상 또는 10% 이상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현재 있는 것처럼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법으로 굳이 상향시켜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과 맞춰서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 지침을 조정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이렇게 의견이 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토론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고 일방적으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헌법상의 문제까지 제기를 하는 지경인데 이럴 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께서 판단을 좀 내려 주시면, 표결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우리 행안위에서 토론을 해 왔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야당이지요, 야당 측의 입장들도 충분히 지금까지 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법안과 관련돼서도 어쨌든 반영을 의무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 건 말고도 이미 수도 없이 많은 건에서 이런 게 통과가 돼 있는 상태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어떨 때는 법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일이 왕왕 있었고 또 필요가 없을 때는 다시 철회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위원장께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박수민 위원님, 추가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바. 판매율 상향, 판매율 같은 거는 계획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데 아마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트려는 것 같은데, 제가 찬성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명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획에 넣는다는 전제로는 오히려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

정책발행 및 사용 근거 이거는 합의되는 대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역사랑 가맹점에 대한 재정적 근거는 ‘할 수 있다’ 조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추가로 의견 더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안은 저희 법안소위에서도 그리고 전체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이야기가 됐던 법입니다. 아울러서 가부터 마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으로 작년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던 법입니다. 다만 그 법안들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부터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소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가부터 마항까지 정부 측에서 동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표결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바사아, 끝의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행안부차관이 비동의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렴을 하고요. 가부터 마항 정부 측에서 동의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이왕지사 지난번 소위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던 내용이니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가부터 마항, 주로 지난번 우리 상임위 대안으로 처리했던 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그렇게 처리하고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박수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표결은 하나요, 안 하나요? 저는 표결로 이해했는데, 반대의견을 표시할 기회는 없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표결할까요?

○**이광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반대의견을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합의 처리로 나가더라고요. 합의 처리는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견 남길 기회는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반대의견을 달고 표결을 하든지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박수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 동의한 것처럼 돼 버리니까 그러면 반대한 측에서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하므로……

○**소위원장 윤건영** 가급적 저는, 위원회 운영상으로 표결을 하게 되면 이게 전례가 남거든요. 그러면 논쟁을 하다가 ‘표결합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신속하게 진행은 될 수 있을지언정 위원회 운영에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활치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의견이 그러하다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고유 판단이십니다. 저희는 선명하게 의무지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합의를 유도하실 건지 아니면, 저는 이광희 위원이 주신 말씀도 일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본 시각이 다른 상태에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놓고서 위원장님께서 끝까지 합의를 유도하실 것인지 그것은 위원장님의 선택이시고 저희는 반대의견을 남길 기회는 주셔야 된다.

○**소위원장 윤건영** 합의를 유도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지연과 신속성의 문제 그리고 원활성의 문제가 매번 충돌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견이 그러하다면 간명하게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나뉘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와 제7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 11인, 찬성 7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법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16개 시도, 99개 시군구에서 이와 같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이 침익적 행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행안부에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의견표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불법 전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전성 불법 광고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요. 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는데,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저는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들을 자꾸 법적 권한으로 가져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지시키는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법안으로 만들어서 일관되게 전국을 다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할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 이에 대한 강도나 혹은 몇 회를 어떻게 한다든지 더 강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답변이 필요하실까요, 아니면……

○**이광희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의견……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차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른 입법에도 있나요? 왜 그러냐면 금방 이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예시적인 규정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보통 시행령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입법이라는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거든요. 전문위원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99개 시군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전화번호로 기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일반 사람들이 혹시 거기다 전화하는 걸 막고 또 그 불법 업주가 전화를 받으면 ‘선생님,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니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공익성 멘트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업체는 그게 불법이 아니고 좀 그렇지 않은 데가 가서 자기가 인권침해를 당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는 소송 같은 걸 제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고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성매매나 유흥업소, 마약 판매하는 것, 불법 이런 쪽으로만 굉장히 한정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게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그다음에 마약 같은 것, 왜냐하면 저희 지역만 해도 강남 이쪽에 보면 전단 수거에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 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대응이 빨라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그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16개 시도, 99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잘하는 데 시군구나 그런 도시에서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들이 이런 것을 피해 나가고 이런 것을 또 하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대응이 가능하니까 불법이

라든가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이 법은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춘생 위원 차관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법적 근거 없이도 99개 시군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정춘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자동경고발신을 했는데 그 후에 그 업체들, 업주들에 후속 조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왜 하냐면 이런 불법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이용서비스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정지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짧게는 이삼일—신청을 공문으로 해야 되니까—길면 한 2주가 걸립니다.

○정춘생 위원 아, 그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정지 신청도 하고요. 그러면 그 2주 동안 이 사람들이 번호도 바꾸고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2주를 벌기 위해서 이걸로 영업을 못 하게 막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 모든 데에다 하는 게 아니라, 과외 강습 이런 건 아니고요 유흥지역이 밀집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 예를 들면 북창동이다 그러면 그런 데 단속 나가서 전단을 수거해서 시스템에다 그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그 업체에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데에는 그런 유흥업소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걸 할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그런 데도 대전이면 예를 들어서 유성구 그런 쪽에 있는 업체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과 관련된 사안이, 유흥업소나 이런 데들과 관련된 게 자치경찰의 업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자꾸 통제하려고……

저는 75%에 달하는 거의 대부분의 중앙사무 중에서 최소한 20~30%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켜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지방에서 하면 뭔가 부족한 듯이, 지금 행안부에서도 말씀하실 때 지방에서 하면 뭔가 법적으로 잘 안 될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법률사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뭐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태도가 저는 좀 문제 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자치적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문제는 자치경찰이나 혹은 전자정보통신과 관련된 지역사무지 이걸 이렇게 중앙에서 통제하면…… 제일 강력한 것은 중앙에서 다 전권을 휘두르는 게 제일 세지요. 군주제가 제일 세지요.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그 원래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 볼 수 없는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조차도 전부 법률화시키면 도대체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 겁니까? 위에서 통제하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위원님, 그건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이것을 통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광희 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통제라는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법적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권익위에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줘서 지방에서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라, 제도개선을 하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권익위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권익위 때문에 축발된 입법 같은데, 침해라고 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23년, 24년 동안에 이 자동전화와 관련된 민원 1만 1423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 분쟁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다.

○**박수민 위원** 권익위가 인정한 불만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알고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부는 과도한 조치だ라고 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를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그것뿐만 아니라 전화를 걸 수도 없거든요, 전화가 계속 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주들이 막 화를 낸 거지요. 자기들 번호 또 바꾸면, A를 써 놨다가 그게 끝나면 또 다른 전화로 했는데도 그걸 우리가 모르면 그리로 전화가 계속 가는 거거든요.

○**박수민 위원** 지금 자동경고시스템 전화가 몇 분에 한 번씩 가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설정하기 나름인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속으로 계속 가고 60분 단위 그다음에 시간대도 보통 저녁에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민 위원** 그러면 그게 아마 영업권이나 사생활, 통신 이런 기본권까지, 그러니까 물론 잘못된 광고는 내리게 해야 되게 할 건데 그래도 그거를 강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권익위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게 권익위 뜻인지 법적 근거 없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권익위 뜻인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권익위도 인정한 사항이고요. 일부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적 근거를 지금처럼 마련하라는 게 권익위의 권고사항입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저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미 여기 나온 것처럼 16개 시도와 99개 시군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결국은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이 법적 근거 없는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간단한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법안 조문에도 보면 일단 ‘시장등은’ 해 놓고 나중에 ‘구축·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리고 다 조례로 하는 겁니다.

○**이성권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논쟁이 존재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질문을……

○**이해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

○**이광희 위원** 법적 근거 관련돼서만 잠깐만.

법적 근거는 조례는 법적 아닙니까? 조례는 법적 근거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보다는 뭐 더 강한……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이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항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의 자율성이라든지 단속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도가 개선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발신시스템 자체가 침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소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법적 근거를 두게 되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라는 불법·악성 광고의 난립을 방지하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위한 법적 근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도 충분히 그 취지가 공감되고 이해됩니다. 자체 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관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불법 광고물 자체가 지니는 패악이 도를 넘거든요. 어쩔 때는 하수구 자체가 막혀서 큰 물난리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보완해라라는 취지의 긍정적 의미에서의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다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견 없으시면요.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윤건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이 종료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이 안건은 작년 11월 27일에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결과는 두 분의 진술인이 나오셔서 핵심 내용은 조속히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3쪽부터 제시된 공청회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 검토입니다.

간토 대지진이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일본 간토 지역에서 약 10만 5000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19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당시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는데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군경이 날조한 유언비어가 급속히 퍼져 다수의 조선인이 살해당했으며,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6661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고, 그 이후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용역을 통해 시행한 연구에서 총 408명의 희생자 명단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간토 대학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활동은 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진바, 그 조사와 관련한 공식적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진상조사가 실시되거나 희생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정안과 같이 공식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유족 등의 신청 및 직권조사 결정에 따라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개개인의 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공식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위령사업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입법 조치라고 보입니다.

제정안은 전반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체계를 참고하여 법문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명 및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토 대학살사건'이라는 명칭의 적절성 여부와 신설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방법, 위상 등과 관련해서는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100여 년 전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진상규명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한계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쪽 하단을 보시면 비용추계에 따르면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총 49억 4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쪽입니다.

제정안은 총 본칙 3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목적·정의 규정 관련입니다. 1조와 2조입니다.

제정안은 제명을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그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간토 대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용어를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용어 변경 필요성과 관련해서 제명과 목적, 정의 규정에서 간토 대학살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과거사 입법례처럼 사건을 객관적·중립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간토 대학살사건이라는 명칭 대신 간토 대지진사건 또는 간토9·1사건 등 중립적 표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용어가 변경될 경우 각 조문에서 해당 용어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간토 대학살사건 정의 중 표현 변경 필요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따라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밝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토 대학살사건의 정의 중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된 ‘조선인들 6000여 명이 학살된 사건’이라는 표현은 그냥 ‘조선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용어 변경 필요성입니다.

안 제10조와 14조, 17조에서는 피해자라는 용어가 위원회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가 아닌 일반적 의미의 피해자로 사용되고 있어 정의 규정의 피해자와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개별 과거사 법률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아닌 희생자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족의 범위와 관련해서 안 제2조 3호는 유족을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서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상 유족의 범위에 비해 다소 좁게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과거사와 달리 간토 대학살사건은 아직 조사 진행 전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추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간토 관련 법은 지난번에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정법이고요.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텐데 각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위원이 쭉 주요 주제별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받아서 충분한 토론을 하는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서 주제별로 정부에서 짧게……

어떻게 할까요? 짧게 쭉 보고를 다 하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차관님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제별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 입장에서는 주제별로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시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제별로 토론하실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하시더라도 전문위원 쭉 보고해 주시고 전체 차관님 말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또 토론하실 부분 토론하시고 그렇게, 오늘 의결할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정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하고 숙성할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그러면 분량이 제법 되는데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부 측과 가장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요. 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활동기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상임위원이 3명입니다—으로 구성되는 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종 진상조사를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은 전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4년 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간토 대학살사건 용어가 변경될 시 관련 용어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0쪽입니다.

그다음에 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각적 관점에서 책임감 있게 진상규명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첫째, 위원 전원을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한 입법례가 없고 구성 방법이 좌측의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보시면 다양합니다. 그래서 구성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예를 참고해서 9명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조직업무량이라든가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의 필요성 및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에 따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제정안은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궤위 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는데 최초 규정에서 위촉은 없기 때문에 동 조항도 임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4년을 활동기간으로 주고 2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를 보시면 다수의 입법례

는 2년 플러스 1년 또는 3년 플러스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의 내용은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그다음에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의 과거사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만 되어 있지 상임위원 3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나머지 부분,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역시 마찬가지로 해임 또는 해촉 규정이 돼 있는데 최초에 임명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촉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균형적으로 해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3쪽입니다.

위원회의 회의, 사무국의 설치, 자문기구의 설치 등인데 이 역시 타 법에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국 직원의 임명권자와 관련해서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정안에서 이를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4쪽입니다.

직원의 신분보장 규정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 측은 이 사안과 관련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위상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38쪽은 진상규명 신청 및 신청 각하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내에 접수처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신고자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고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령 위임 관련 조항이 한 조에서 두 가지가 걸쳐 있기 때문에 법제기술상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2쪽입니다.

진상규명 조사개시 및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참고한 것으로 법체계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일본 정부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실제 자료 요구, 실지조사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교적 협상이 선행되어야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 제21조제6항입니다.

21조 6항은 다른 법률에 있는 조항이긴 한데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위상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상,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이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 논의

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0쪽입니다.

진상규명 등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역시 다른 법률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기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 제정안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4쪽입니다.

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 공무원 파견 등과 관련 규정입니다.

역시 타 과거사법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체계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지만 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비밀 준수의 의무·별칙·과태료에 관한 부분으로 이 역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별칙과 관련해서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별칙이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제2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전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법제 원칙에 따라 별칙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태료 역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과태료나 별칙의 규정 순서가 법정형이 높은 것부터 그다음에 조문 순서대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30조의 1호와 2호의 순서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있고 이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 개시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총괄해서 차관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1923년에 발생한, 당시 재일 조선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제정안의 취지와 입법 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100여 년 전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 또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유족들은 아마도 일본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외, 일본에 가서 사실조사 등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을 꼭 고려한다면 이 법대로 해도 실효성 담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과거사정리법에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사무국이라든지.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진화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관련 연구나 사례 등이 충분히 학

계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실제로 희생자분들이나 유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건 진실규명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연구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 당시에 조사되었던 것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진화위 2기에서 조사해서 한 408명에 대한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국을 구성하고 이런 조사를 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측에서도 이게 19대 때부터 추진돼 온 거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이것을 소홀히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당초 지금 이 제정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거나 이런 부분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라든지 조사에 관한 여건이 형성된다면 그때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무국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외교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조금은 신중한 답변 같은 것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마지 사무국 설치나 이런 부분은 그 방안이 결정되면,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정부 측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법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명에 간토 대학살사건 대신에 간토 대지진사건 또는 간토9·1사건 등의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행안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저희도 공감합니다. 피해자를 희생자로 한다거나…… 6000여 명에 대한 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는데 정의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제 의견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법명에 가치 평가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반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사건 특별법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지진만 있으면 우리가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도 규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학살, 조선인에 대한 대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법명에 객관적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대지진사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 간토 대학살사건이라고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행안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의견은 제주4·3이라든지 여수·순천 등 과거사 관련해서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 지명이라든지 날짜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춘생 위원** 제주4·3사건 특별법은 아직도 정의가 분명하게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정명 운동이 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법 개정안에 정의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삼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아마 이 법안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부인할 위원은 없을 것 같고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역사적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행안부의 입장과 외교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특히 강제동원이나 또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사과나 책임도 없는 문제도 극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전의 4·3이나 5·18이나 반민족특위 같은 경우는 다 국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국외 그리고 또 오래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헌법적 의지 또 정부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이걸 풀어 가는 방식의 혁명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관련 정부에서 과연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고 조사의 한계, 아까 차관님께서 실효성 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한 법적인, 이 자체 내에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국내외 이런 입법 사례가 있었는지 그 실증적인 연구나 입법 사례, 이런 국제적인 사안이 있었는지 그것 두 가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최근에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에 진화위 2기에서 조사한 게, 정부 측에서 갖고 있는 것은 그 자료가 있고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진화위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는 일본 측에서 오히려 사이토 마코토 문서,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 다이소 12년 일기 등 일본 측에서 이것과 관련 소신 있는 학자라든지 이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온 게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추가로 그런 부분을 연구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업무 자체는 약간 공백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뭘 의견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용어와 관련해서 변경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토 대학살사건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학살이 이루어졌다는 게 입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특히 외교적인 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명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행안부가 내고 있는 대지진(9·1)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보면 간토 대지진(9·1)사건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성권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지정을 하는 그 자체가. 자연재해 안에 그 과정에서 우리 조선인이 희생된 사건이잖아요. 이 두 개가 양극단으로 조금 틀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이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대학살이라는 것도 너무 과도한 표현이고. 그런데 간토 대지진 이렇게

해 놓으면 자연재해에 대한 규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일본인 희생자들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규명할 수도 없잖아요. 명칭이 진짜 너무 잘못돼 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명칭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고민하는 건데 이런 과거 역사의 사건별로 개별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모든 조사가 다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도 일본 정부가 제공하지 않으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제공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못 만들어 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법안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도적인 단계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이 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지 저도 답은 없는데 저는 진상규명, 진실규명과 희생자가 있으면 희생자와 관련된 피해보상들이나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확 떠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달희 위원 저도 이성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요. 100년 전 일이라…… 아까 뒤에 피해자를 희생자로 하고 유족 이런 얘기할 때 100년이면, 한 대를 30년씩 이렇게 보면 3대가 지난 일인데 우리가 진화위 2기 연구용역에서 이 부분이 발굴이 됐다. 그렇지요? 이 주제나 어젠다가 발굴이 되고 지금 일본 측의 민간 연구 자료나 민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됐다는데 이 중간 부분에 하나 더 거쳤으면, 특별법 하기 전에……

진화위의 2기가 했으면 그러면 심층적으로 어느 정도 연구를 한 번 더 붙여서, 희생자가 6000명이라는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희생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심층적인 연구 이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명예회복 단계에서 사료관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좀 더 실질적인 연구 이후에 이 특별법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하시고 이광희 위원님.

○이해식 위원 이 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격이 이 정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오래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진상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하고 때로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배상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엄두를 못 냈던 거고 또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른 거지요.

그리고 저는 간토 대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백한 건데 이것이 학살이냐 아니냐를 조사해 보고 증명한 뒤에 학살이라고 하자? 이건 너무 엉뚱한 얘기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 왔던 것이고 10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간토 대학살이 대학살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고.

다만 이것을 법명에다가 담을 거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조금 더 분명하게 예를 들면 간토 대지진 시 조선인 대학살사건 이렇게 하든지, 간토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아니면 대학살이라고 하는 말, 학살이라고 하는 말이 외교 관계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조금 강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면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이렇게 가든지 그럴 소지는 조금 있지만 그러나 간토 대학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두 번 정도 더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위원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입장례가 없는, 국회에서 전원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들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광희 위원 지난번의 질의하고 또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검토해 보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차원의 연구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한 적도 없었고 국가 차원의 외교 관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는 계속 연구조차도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연구를 해서 뭐를 하자고 하는 것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국회 차원에서는 보면 19대와 21대까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 왔고 또 2023년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간토 대학살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네요.

그리고 일본에서 조차도 이 명칭과 관련돼서도 2007년도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앞둔 2022년에도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는 추모의 모임이라고 학살에 대해서 명백히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2023년 관동조선인대학살을 기억하는 행동이라고 일본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에서 조차도 계속적으로 표현을 해 왔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지금 의견을 낸 것처럼 간토 대학살사건을 간토 대지진사건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대지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선인이 학살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는 시점을 어느 타이밍으로 정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이 법이 통과가 됨으로써 안 했었던 연구도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자주성이나 국민의 자주권에 대한 문제들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일본 측에서 마치 국가의 문제로 제기를 한다면 그것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좀 늦었지만 19대 때부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에 대해서 하자고 계속적으로 미뤄 왔었던 것을 22대 국회에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지금에서는 좀 맞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성권 위원님이나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되는 몇몇 지점에 대해서는 좀 손을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합의가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합의 처리를 하는 게 국회 여야 합의를 해 왔었던 19대와 21대의 합의 정신을 22대 때 이어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지막 발언으로 박수민 위원님 하시지요.

○박수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전문성이나 이런 일을 끌어온 경험치 또 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 정리에서 항일독립투쟁 당시 재외동포, 그게 업무 범위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가는 것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의견 또 100년 전 과거사를 조사하는데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의견, 이 일을 어떻게 풀어 가는 게 좋은지 그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기반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외교적인 문제와 얹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자주적으로 하면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자주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 하는 게, 국회의원들은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지지하고 싶습니다. 지지하는데 이게 끌어갔을 때 이 일을 전문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의견을 받아 보자는 거고 이걸 힘 있게 끌어가려면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적 지지가 과거에 공청회 등등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희석이 돼서 지금 이것에 대한 여론적 지지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결정한다는 테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를 거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 법안은 제정법안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토론할 거창 관련 법안처럼 과거사와 관련된 법을 저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또 특히 행안부 의견에 보면 ‘100년이 된 일이다’ 그리고 ‘외교적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데요. 20년 전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을 처음 논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도 당시에는 논란이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과거사 관련 법들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오후에 다룰 거창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정부가 갖는 여러 가지 부담감과 우려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커지고 국력이 발전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과 역사에 대한 소명을 다하는 게 저는 정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공감대는 여야가 다 있는 거고 정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되게 우려스럽겠지요, 한 발짝 빠지는 것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법 관련해서 논란이 엄청 있었습니다. 2003년, 2004년,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해 나갔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간토 대학살 관련 법안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진일보한 의견들을 다음번 법안소위에는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앞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의식과 녹여 내서 같이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거창법도 마찬가지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빨리 속도를 내는 법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에 꼭 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십사라는 당부말

씀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6)

1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6)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박용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실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맙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의사일정 10항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특정 분야의 사기업체 등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현재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건설·건축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이른바 전관 업체와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건축·건설 분야에 있어 설계 또는 감리가 식품·의약품 분야의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과 지난 2023년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발생 후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취업대상기관의 확대는 퇴직 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가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영세업체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등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정부 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부칙이 지금 현재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매년 1월 1일자로 고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시행하도록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건축 설계·감리 분야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부정한 민관 유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취업심사대상기관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이 분야에서는 외형거래액이 어느 정도 되면 영세한.....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지금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으로 하는데 외형거래액 1000억, 자본금 1억 또는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이 취업심사대상기관입니다, 현재로는.

○**이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법으로 규정할 때는 일정 부분 이상.....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법으로는 일정 부분 해 놓고 시행령에 가서 그것을 더, 외형거래액을 굉장히 낮출 생각입니다.

○**이달희 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 1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 원 외형거래액.....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매출액 10억입니다.

○**이달희 위원** 1년 10억 되는 데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취업제한에 걸린다는 거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법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없으면 처리할까요?

이성권 위원님하고 모경종 위원님이 방금 오셨으니까 잠시 숨 돌릴 틈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광희 위원** 일단 통과합시다.

○**이달희 위원** 일단 통과.....

○**이성권 위원** 통과하시지요, 다른 분 이견 없으면.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의사일정 11항 주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급자에 대해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급여의 수급권에 대해 압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연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압류가 가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양육비채권자가 수급자의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으로서 양육비채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구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과반수가 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만 압류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법이 최초에 해당되는 법인데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님께서 사학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해 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되면 공무원연금법이 선도적으로 개정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성립된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개정안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압류금지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양육비채권의 법적 성격 및 특성, 공무원연금 수급권과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 시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 연금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현일 위원** 지금 현재 다른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양육비채권에 대한 압류가 협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것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다른 법들도 쫓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먼저 이 법을 선도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런데 차장님, 여기 7페이지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나름의 큰 골격을 이루는 법인데 이 기본법에서 압류금지 조치를 뒀다는 것은 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런데 여기 공무원연금부터 압류를 허용하고 인사혁신처 의견대로라면 국민연금까지 다, 공적연금들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닌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회보장적 급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데 양육비채권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아 가지고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한 건데 가족 중의 한 명인 부양해야 될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다면 사회보장기본법부터 접근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이것은 지금 특별법 형태기 때문에, 연금 종류라든지 이게 위낙 다양해서 저희 공무원연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에 대한 연금은 사회적 합의인 부분이고……

저는 애초에 이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견이 없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전문위원 보고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방금 차장님 말씀에 따른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어쨌든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연금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대명제와도 같은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지금도 연금 압류가 일반조항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세금 같은 것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연금의 1 이상을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민사집행법에 연금을 압류하지 못하더라도 통장에 꽂힌, 이미 수급한 급여액의 185만 원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회보장기본법부터 출발해야지 공무원연금부터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취지의 질문인 겁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회보장 연금 일반적으로 압류가 금

지되어 있는데 일부 연금법에서는 세금 체납처분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게 추가로 예외로 더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법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자녀 복리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달희 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정도의 지적으로 봐 주시고요.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14시16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8항까지 총 17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송상교 사무처장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송상교 사무처장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화위법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젠가 한 번은 리뷰가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말씀은 정부 측과 전문위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쟁점이 없는 부분들을 빼면 쟁점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처음부터 이 전체를 한번 리뷰를 죽 할 건지 아니면 오늘은 쟁점 네 가지 사항만 토론할 건지 이것 좀 정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게 처음으로 상정됐는데 처리하기에는 조금 난망한 상황이니까 전체를 한 번 다 볼 건지 아니면 쟁점만 볼 건지, 오늘 만약에 쟁점만 본다 하더라도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전체는 다 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 봐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선할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그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 올려놓고 계속 법안으로 하되 여기서 일단 쟁점 되는 것만 훑고서 다음으로 넘기자……

○**소위원장 윤건영** 넘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넘어갈 건지.

○**이광희 위원** 꼼꼼하게 보는 거는 이것 통과시킬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오늘 하든 다음에 하든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달희 위원 쟁점을 미리 보고 그 쟁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공부해 가지고 와서 다시 리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위낙 발의한 의원님들 숫자도 많고 의원님 별로 개별 차이도 제법 존재할 것 같고 한데 이걸 리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쟁점별로 우리가 큰 출기를 잡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따로 저희들도 양쪽 설명을 듣고 나중에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도 그 방식에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은 크게 전문위원이 검토한 네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번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 심사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전부개정법률안이 있고요, 15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서 전체 총 17건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현재 2기 진화위의 조사기간이 금년 11월 26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기 위원회를 어떻게 출범시킬 거냐를 놓고, 전부개정안 2건은 3기 위원회로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부개정법률안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연장할지 거기에 대해서 의원안대로 다 다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상 근거입니다. 이 법에 보상 근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쟁점 사항별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건의 전부개정안의 구성과 총괄검토 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등의 내용으로 총 6장,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용혜인 의원안의 경우는 장은 똑같은데 조문 수가 64개 조문으로 구성하게 되고 김성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61개 조문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맨 밑의 표를 보시면 현재 56개 조문에서 김성희 의원안은 5개 조문이 신설되고 용혜인 의원안은 8개 조문이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하고 신설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 그대로 가든가 아니면 약간의 변경이 있을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정대안을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수정대안을 만들 수 없는 쟁점 사항이 있는 부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기간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네 번째, 손실보상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전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네 가지 사항이 아마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양 전부개정안이 있고요. 이훈기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안의 내용을 보면 진실·화해 위원 수를 11명, 상임위원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위원회 의결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님 안은 위원 수를 11명, 상임위원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위원은 대통령이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선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훈기·이해식 의원님 안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명씩 위원을 추가로 선출하여 위원 수를 13명으로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이 표에 해당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한병도 의원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오셔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용혜인 의원안이 대통령 지명 뜻을 삭제하는 것은 유사 입법례가 없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어서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성희 의원안은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법 제4조제2항 각호, 위원의 자격요건이 어떠어떠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도록 현재 각호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위원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며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훈기·이해식 의원안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위원 추천 뜻을 신설하는 것은 위원 구성의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의 인사청문을 규정하려는 것은 유사 직위 중 국민권익위원장, 국가교육위원장 등 다른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점 등을 참고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나 현행처럼 조사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과 상임위원 수 증가를 통해 진실규명 조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위원 11명 중 지금 현재 3명의 상임위원을 4명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과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비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의 적절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원 및 상임위원 수 증가를 통한 진실규명 사건 대응과 소수의견 반영 통로 마련의 필요성, 대통령 지명 뜻 삭제의 적절성과 2기 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 구성율 축소하기로 한 입법정책적 결정의 취지와 비교섭단체 상임위원 추천 뜻 배분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전문위원님, 여기까지 하고 받고 토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제가 넘어가면 또……

○**전문위원 조문상** 예, 그러면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위원 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종래에 여러 안들이 있었고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여서 저희가 하나의 단일한 방향으로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2기 위원회의 지난 4년 동안의 운영을 통한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 1 그리고 여야 각 4 이렇게 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성의 다각화 또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합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 좀 완충적인 지대 이런 것들의 필요성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그런 것들이 제기된 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발의된 안을 기초로 봤을 때는 상임위원을 4명으로 하고, 그 것은 아마도 각 상임위원이 소위원장과 겸하시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현재 2기 위원회의 2개 위원회에서 아마도 3개 위원회로 늘리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각 소위별로 위원장을 뺀 나머지 위원님들이 균분해서 거기 배치가 되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만약에 3개 소위를 운영할 경우에는 각 소위별로 균등하게 위원이 배치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앞서 공유했던 바처럼 네 가지 큰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주제에 다른 의견을 좀 주시면 다음번에 이 법안을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생각들도 확인하고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쉽게 말하면 3·3·3으로 하자라는 말씀이잖아요, 정부·대법원·국회 이렇게 맞는 거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지는 않아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현재의 2기 위원회의 구성은, 좀 더 원활한 구성을 위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현재는 대통령과 국회만으로 되어 있고 여야 동수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

다른 하나는 예컨대 가장 최근에 발의된 용혜인 의원안이나 김성희 의원안이나 이렇게 위원 수를 늘리는 부분들을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소위가 늘어나고 각 소위별로 균분해서 들어가는 부분, 예컨대 김성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1명을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10명의 위원이 계시는데 3개 소위에 10명이 들어갈 경우에는 균분 배분이 어려운 점이, 애로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위원 정수를 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면서 토론하셨으

면 좋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소위원회를 3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2개로 운영하고 있나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현재는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3개로 운영해야 될 사연이 있나요, 3기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러니까 저는 현재 발의된 안 중에서 이제 상임위원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그럴 경우에는 운영상 소위원회가 하나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달희 위원** 그러면 4명씩, 4명씩, 4명씩 해서 12명이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럴 경우에는 그게 적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달희 위원** 지금 10명으로 할 때는 3개 소위로 나누기가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10명은 3개 소위인 경우에는 숫자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고요.

지금 여러 의견들은 있는데 2기 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1기 위원회와 차별성을 가지고 도드라지는 특징은, 단체 인권침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라든가 강제징집이라든가 또 그리고 그중에서 집단 수용시설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1기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2기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조사 및 규명이 시작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피해 규모 대비 실제로 규명된 조사 숫자가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만약에 3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단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직권조사 요청이 피해자 측에서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별도의 깊은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달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기가 대통령 1인 추천, 여야 각 4인 추천해서 활동해 보니까 완충지대가 필요하더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아무래도 여야가 함께 추천해서 구성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들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 그런 영역,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야 동수로 현재 구성돼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 저희 의견 정족수가 재적 과반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의견 합의가……

○**이달희 위원** 여야 동수에 대통령 추천 1인은 여당 봇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이 아무래도 과반 이상인데 그래도 완충지대가 필요했나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위원님들이 사정에 따라서는 그날 회의 출석 못 하실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항상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아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결론 낼 것은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좀 곤란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섭단체가 동수로 양쪽에서 추천

되다 보니 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례를 따로 제공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살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런 예들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게 해서 따로 제공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한병도 의원이 제안한 인사청문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계속 진화위 위원장님을 놓고서, 사실은 이게 지나간 과거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서의 평가고 조사·분석이다 보니까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혹은 역사를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서 너무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뭔가 하면 위원장 되기 전에 충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이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동의를 하지만 진화위 같은 경우는 조금은 국민 인사청문 절차는, 그런 것들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여기 위원회 와서 활동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견으로서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지금 현재 9명이잖아요. 대통령 1명, 여야가 4명씩인데 그 당시에도 국회가 아닌 대법원이나 기타 중립적인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나요, 2기 때, 이 법을 만들 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2기 때는 그런 논의들이 중심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1기 때는 위원이 15명이셨고 그때는 대통령 4명, 대법원장 추천도 3명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2기가 만들어질 때에는 1기보다는 사건 수가 좀 적겠다, 그래서 조직을 약간 슬림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원수가 줄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아까 소위를, 상임위원이 4명이 되면 1명은 위원장이고 3명이 소위 위원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소위를 할 때 각 1소위, 2소위, 3소위가 소위 위원들이 같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3명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2명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할 이유가 뭐예요, 균등하게 하는 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컨대 소위를 겸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진화위가 그동안 운영 경과를 보면 위낙 기록도 많고 심의하실 것들이 많아 가지고 소위를 겸직하실 경우에 업무적인 부담들이 위원님에게 크신 부분이 있었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사무처장님도 말씀하셨고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균등하게 해야 된다는

게 상식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 13명 정도……

여기 안에는 15명, 11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안이 4개 안이나 있는데 저는 한 13명 정도 해서 대통령 한 셋, 국회 여덟, 여야 넷, 넷이겠지요. 대법원장 둘 해서 13명이면 4명 씩 소위를 나눠서 하고 위원장 1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진화위가 지금 2기가 벌써 운영이, 조금 있으면 2기까지도 운영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조사기간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게 위원회 구성을 소위 3개로 해서 4명으로 하든 그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토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볼 때 한 이백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현재 저희가 210여 명, 214명 정도가 근무 중입니다.

○**고동진 위원** 그중에 파견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파견공무원은 현재 한……

○**고동진 위원** 진실과화해위 이게 만약에 끝나면 각 부처로 돌아갈 사람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러니까 정원에 정해진 파견공무원이 있고 정원 외들이 있는데요. 다 합치면 현재 약 한 94명 정도가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94명의 나머지이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러니까 그 외에 별정직 또는 전문임기제 또는 실무원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직접 뽑는 직원도 약 한 120명 가까이 됩니다.

○**고동진 위원** 그 120명은 이 진화위가 끝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현재 진화위가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컨대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진화위가 활동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임용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동진 위원** 기간 중에만 일하는 것으로 임용된 사람입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러니까 별도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에 종료가 되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인사혁신처니까 1기·2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 본인이 다 보지는 않았겠지만 여태까지 1·2기 운영하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한 위원회 구성이나 누가 뽑고 누가 추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자료에도 보면 지금 한 2000여 건이 더 조사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홀딩이 돼 있다라고도 자료에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조사관들이 실제 조사를 다 하고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이든 별정직이나 전문직으로 뽑아서 한 백칠팔십 명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파견으로 나온 사람이든 아니면 별도로 채용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제로 그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사혁신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저는 인사혁신처는 아니고요.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정춘생 위원** 진화위.

○**이달희 위원** 인사혁신처 아니고 진화위세요, 진화위 사무처.

○**고동진 위원** 쏘리, 안경이 안 보여 가지고.

진화위에서는 전부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일단 채용과정에서 과거사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일종의 전문성과 역량 이런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주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채용을 하는 과정이 있고, 이 직원들이 파견이 되면 수시로 안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조사 방법이라든가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고 통일성 확보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다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게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그다음에 새로 별정직으로 뽑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진화위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아주 일관되게 이렇게 그냥 막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1기가 끝나고 2기·3기로 연장하고 이러는 것에 따라 가지고 특히 새로 뽑은 분들은 굉장히 혼들릴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러니까 지금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2기에 거쳐서 이미 많은 조사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 축적된 자료와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은 있고, 특히 현재 2기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100여 분의 조사관들은 4년 동안 많은 수의 사건들을 직접 조사하고 진술도 받고 보고서를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셨던 분들은 이후에 계속 조사기간 연장이 되어서 계속 사람을 뽑게 된다라고 하면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동진 위원** 부처에서 파견된 분들이든 별도로 뽑은 분들이든 그분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실로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또 하고 있는 건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떻게 위원들을 구성하고, 그것 이상으로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문의를 하는 겁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지금 쟁점이 위원 구성 문제 같거든요. 지금 다수의 의원님들이 현 9인 보다도 더 늘리는 안을 냈고 추천·선출 방식도 굉장히 다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과거에, 현재는 여야 4인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추천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니면 추천된

인사로 인해서 진상조사가 늦어지거나 의결이 늦어지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현재 위원회에서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국회에서 추천하셔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임기가 종료됐을 경우에 원래 법상으로는 1개월 내에 후임 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국회에서 선출되는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계속 임명이 안 됐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정춘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화위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 관련된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는 다 위원회에서 또는 소위가 구성되면 소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 구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원 절차가 과도하게 저는 국회에서 많이 추천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여야가 각각의 역사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첨예하게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추천이 되어서 활동하게 되면 이게 진전이 안 되고 계속 논란만 논쟁만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선 선출·추천 방식을 공신력 있는 역사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추천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위원회 구성상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개정안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서 약간 놀랍기도 한데요. 저는 이것을 왜 대통령 추천 그리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 각각 추천 이렇게 제한되는지, 그런 역사적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1기와 2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3기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내신 의원님들의 성향은 1기와 2기의 절충 정도로 지금 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한병도 의원님 법률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가 쟁점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문상**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80쪽을 보시면 진실규명 신청과 조사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좌측 하단 부분의 표를 보시면 진실규명 신청기간과 관련해서 현행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용혜인 의원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또 위원회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김성희 의원안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위원회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현행과 같고요. 정춘생 의원님 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 조사기간과 관련해서 현행은 3+1입니다. 기간은 3년이고요, 연장은 1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용혜인 의원안은 5+2년이 됩니다. 김성희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6+1이 되고 정춘생 의원님 안은 5+3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별지 표는 개정안의 내용인데요. 조지연 의원님 안과 박정 의원님 안, 복기왕·임미애·정준호·이개호 의원님 안의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그다음에 조사 기간은 3+1 또는 3+2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훈기 의원님 안은 신청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요, 조사기간은 역시 5년+1년이 되겠습니다. 양부남 의원님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고요, 조사기간은 5년+1년으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2기 위원회에서 신청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연장한다, 현행은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2년으로만 하고 있는데 김성희 의원님 안과 용혜인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사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진실규명 조사의 진행 상황, 추가적인 조사 수요, 조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입법정책적 결정과 한시법으로서의 동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22대 국회 초반부터 현재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의 수가 매우 방대하고 이것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고 피해자 유족단체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더 확보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낸 바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 5월 26일 부로 저희가 조사기간이 종료되어서 현재 더 이상의 추가조사는 하고 있지 않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만 5월 26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사 중지한 사건이 2116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형제복지원 같은 그런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분들 중에서 신청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래서 진실규명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계속 있어 왔고 직권조사에 대한 요청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하지 못했고 실제 해당 사건들의 전체적인 피해자 총수, 확인된 총수에 비했을 때 한 10% 정도만 진실규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권조사 등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진실규명을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조사기간 연장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제대로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말을 돌려서 말씀하시는데요. 조사 중지된 게 2000건이고, 소위 말해서 지금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예측되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게 몇 건인지를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논의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추정일 수밖에 없고, 예상일 수밖에 없고 사실 2기가 만들어질 때도 1기에 비해서 사건이 더 적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서 세팅이 됐던 거여서, 어쨌든 3기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2기처럼 조사가 중지되고 결론을 못 내는 사건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예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까 2116건은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체 사건을 기준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청교육대의 경우에는 현재 2기 위원회에서 여러 조사 과정을 통해서 대략의 피해자 규모나 명단이 확보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삼청교육대는 한 2만 500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2기 위원회에서 한 4000명 정도가 진실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에도 확인된 명단은 한 3만 8000명 정도다라고 추산이 되는데 2기 위원회에서는 주로 신청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643명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이루어졌고 선감학원도 4689명 중에서 230명 그리고 해외입양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해외입양되신 그 피해자분들은 사실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기 때는 약 3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최종적으로 56명만 진실규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리저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만약에 3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 희망자분들이, 2기 때 집단수용시설 사건이 1161명이 규명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 한 1700에서 1800명 정도는 최소한 신청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단체 쪽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권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2기에서 아까 이런 단체 사건, 집단수용시설 사건 다 합치면 약 8000건 가까운 정도가 조사가 되었지만 나머지 90% 정도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다음 주제.

○전문위원 조문상 153쪽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현행법은 희생자 등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들은 이를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기준·범위·종류 등에 대해 법 시행 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용혜인 의원안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은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기한을 좀 단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김성희 의원님 안

과 이해식 의원님 안은 별다른 시기는 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배상 또는 보상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배·보상의 기준·범위 등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제정 시기를 한정할 경우 조속한 보상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국가의 재정 유연성과 내실 있는 심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안이 적절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보상법 제정 시 배·보상 대상, 범위 등 중요한 부분은 법률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 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달리 개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의원안, 조지연 의원안, 정춘생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 현행 진화위법에 아예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전부개정안의 내용들은 그 보상 관련해서 법률을 따로 정하라는 거고 이것은 그 법률에서 정할 내용을 아예 진화위법에 넣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은 같습니다. 법률에 들어갈 내용들인데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진실규명 관련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이상희 의원안과 조지연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춘생 의원님 안은 위원회 소속으로 그 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된 것 그다음에 보상 원칙, 결정전치주의 이런 것들은 다 보상금에 관련된 세부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입법례도 있고요. 다만 세세한 부분에서 수정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보상 관련해서 법률로 따로 정할지 아니면 이 법에 보상위원회 관련 규정을 규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러니까 이른바 진실규명된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보상법의 입법에 관련되어서는 저희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배·보상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권고를 한 바가 있었고 이 부분을 신속하게, 배·보상에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보상법을 국회에서 입법을 하자라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 의견을 드린 바가 있고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가급적, 지금 진실규명 결정들이 계속 속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말씀 없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혹시 수치로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집단시설 같은 경우에 배·보상의 규모가 추정된 게 있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러니까 현재는 법원을 통한 국가배상소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일한 방식이고, 그래서 1기 때 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피해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배상소송의 진행 추이를 살펴서 얼마 정도가 실제 배상되었는지를 따져 본 적이 있고요. 약 한 7000여 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었고 만약에 향후에 배·보상법이 만들어지면, 물론 한국전쟁 희생자분들을 중심으로 추산한 겁니다만 소송 방식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약 한 8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금으로.

반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해 보았을 때 약 8000에서 1조 사이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될 경우에 약간 좀 더 늘어나는 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차이가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 대상은 집단시설이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어떻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집단시설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같이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었고요. 현재 집단수용시설 사건은 대부분 다 국가배상을 통해 가지고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할 때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것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건 피해보상 받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의원은 6개월 안에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2년 안에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조문상 법률을, 보상법을 따로 만든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용혜인 의원님은 그걸 2년 안에 제정을 해야 된다고 법에 아예 명시를 했었고……

○고동진 위원 아, 법 자체를?

○전문위원 조문상 예, 법 자체에 2년 안에 제정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그 보상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법을 마련하는 것에 따라간다?

○전문위원 조문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개정안은 아예 이 법에 보상위원회를 넣자……

○고동진 위원 못 박을 필요는 없다?

○전문위원 조문상 아니, 넣자는 얘기고요.

전부개정안 2건과 이개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보상 관련해서 아예 따로 법률을 정하되 일부 법률은 그걸 2년 안에 아니면 6개월 안에 법률을 만들라고 아예 법에 명시를 하고 있고 김성희 의원안은 그냥 법률로 따로 정하자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춘생 의원님 안이나 나머지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보상법에 넣을 내용, 보상심의위원회 자체를 지금 아예 이 법에 넣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진화위 2기에서는 진화위 안에서 조사를 다 끝내고 그리고 여기 법 안에 보상법을 넣으면 바로 보상이 가능한데 왜 보상법을 따로 만드는 걸 입법 추가하는 거를 요청하셨나요? 아까 처장님 말씀이 진화위 2기에서 보상법을 따로 만드는 걸 국회에 요청하자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정책권고로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 사건을 조사해서 진실 규명을 하는 조사 기구이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은 인권침해가 있었다거나 전쟁 때 희생되었다 까지 결정해 드리는 거가, 그러니까 결정서를 작성해서 통지해 드리는 것까지이고요. 그 이후의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배상 절차인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 배상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달희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런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하는 방식이 오랜 기간 쌓여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달희 위원 진화위 안에, 이 법 안에 우리가 보상 규정을 넣어서 바로 보상하게 하면, 조사한 사람이 그 고통의 강도를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바로 보상하기가 편할 텐데 독립 입법을, 배·보상법을 따로 만들어서 해 달라는 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결국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절차로 할 것이냐는 입법적으로 정해 주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고 해당 기관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제주4·3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진상규명도 하지만 보상심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입법례를 봐서 배·보상 이 부분도 별도의 입법이 아니라 이 법 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상희 의원하고 조지연 의원하고 성일종 의원하고 다른 부분은 그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했고 저는 진화위 소속으로 했거든요. 어느 것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아까 이달희 위원님의 문제의식처럼 —잘될 수 있을까를 진화위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먼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윤건영 사무처장 말씀하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진화위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책권고했던 취지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까지 진화

위의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가 하는 진실규명 조사는, 그러니까 다른 기구의 경우에는 어떤 분이 자료를 내면 좀 더 간단하게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주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진실규명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보고서의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규명과 보상을 같은 기관이 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험들은 있는데 일반적인 법령 예로는 국무총리실에서 보상을 챙기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정책권고 시에는 그 부분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상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채현일 위원** 먼저 하세요.

○**이상식 위원** 처장님이신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이상식 위원** 처장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의 규명 대상이,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해야 되는 대상이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해외입양,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많습니다.

○**이상식 위원** 만약에 진실을 규명해서 보상하려면 각각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삼청교육대 보상법 이렇게 개별 법률을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 이 사안들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십 년씩 기다린 분들인데 법률 제정을 각각의 행위별로 하려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또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보상위원회를 차제에 둬 가지고, 소속은 위원회 자체에 하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실에 하든지 간에 보상위원회를 한꺼번에 일괄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고 개별 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것이 과거사정리법의 조항으로 들어오든 별도의 법이든 간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삼청교육대 보상에 관한 법률, 형제복지원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게 개별적으로 다 법률이 제정돼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저희가 정책권고 한 것도 진실·화해위원회가 결정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보상을 심의하는 기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식 위원**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원장 윤건영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현일 위원 아까 처장님이 조사와 보상은 별개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채현일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158페이지를 보면 위원회의 한 시적 기구로 해 가지고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는데,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이나 삼청 보상법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밑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진화위 밑에 그냥 보상위원회를 두는 게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낫다는……

○전문위원 조문상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게 낫다 그런 취지입니다.

○채현일 위원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신 거예요?

○전문위원 조문상 예, 보상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진화위는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존속 가능한 총리실에 두는 게 타당,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채현일 위원 총리실에다 두는 거지요, 위원회가 아니고요?

○전문위원 조문상 예.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드리면 저는 아까 처장님이 말씀한 것, 조사와 보상은 별개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의견은, 약간 지엽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제 주변에도 보면 국가 권력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본 분들이 진화위의 조사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약간 안 좋은 의미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해서 조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독립을 시켜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상하고 같이 가게 되면 더 많은 외적인 작용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 보상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국무총리 산하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배·보상 관련해서 기구를 둘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쟁점, 둔다면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쟁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문상 마지막으로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을 보시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입니다. 용혜인 의원안, 김성희 의원안, 양부남 의원안, 이광희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2018년 헌법재판소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즉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이 개호 의원안이고 다른 안들은 중대사건 이외의 사건까지 범위를 넓히고 주관적 기산점까지 배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배제에 따른 권리구제 확장 가능성과 시효제도의 취지인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입법례는 개별법에 보상심의회를 설치를 하고 보상금 결정에 대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해 가지고 보상의 주관적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입법례의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이 부분도 아까 논의되었던 배·보상법이 입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법원에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소멸시효를 현재까지 계속 일부 적용하면서 구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이미 이전에 결정이 되어서 바뀐 대법원 판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개별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시에 권고사항으로 국제적인 인권적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권고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하실 문제이겠지만 이런 소멸시효로 인해서 구제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이해한 것하고 좀 틀려 가지고.

소멸시효를 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피해를 봤고 보상을 해 줘야 돼,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1년이고 2년이고 안 하면 그게 소멸이 된다. 여기 법에서는 그 검토의견이 나온 거지요, 전문위원도 그렇고?

○**전문위원 조문상** 예.

○**고동진 위원** 지금 그 말씀 하신 겁니까, 아니면 소멸시효를 두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 조문상** 개정안이 소멸시효를 두지 말자는 그런 겁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 부분은 결이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보상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입법적인 개정안들에는 별도로 배상과,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에 언제까지 보상을 할 것이냐 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진화위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한 2년 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 보상심의를 하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아직 그런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서 언급된 것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그분들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법원은 그 부분들을 많이 완화해서 해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진화위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완화해 주는 대상을 진화위법 2조 1항 3호·4호에 국한해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더 넓힐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고동진 위원 알아들었어요.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의견……

○이달희 위원 지금 현장에서 피해 보상받을 사람이라고 조사가 결론이 났는데 법원에 3년 이내에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것은 그런 경우가 있을……

○이달희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입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많나요? 왜 3년 안에 안 하는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전에는 통지를……

○이달희 위원 본인이 신청했으면 조사가 끝나고 나는 보상·배상받을 사람이라고 분류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컨대 1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되신 분들 중에서는 국가배상소송을 안 하거나 또는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 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런 분들과도 관련이 일정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화위에서 결정을 했을 때 배·보상에 관한 소멸시효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라고 지금 저희가 공유를 한 거고요.

크게 오늘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죽 리뷰를 해 봤습니다. 이 사안, 오늘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이외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저는 네 가지 중에서 아까 세 번째, 조사기간 관련해 가지고 아무도 의견을 안 냈는데 조금 제 개인 의견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1기와 2기, 1기는 4+2, 2기는 3+1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이성권 위원 그런데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3기가 출범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조사 대상이 있을지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그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 답변을 생각을 해 보면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를 못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의 1기나 2기를 준용해서 적용하면 그냥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5+3년도 있고 복잡한데 그럴 필요 없이……

이게 우리가 또 3기 하다가 그 기간 끝나고 나면 오늘처럼 또, 미흡한 조사가 됐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히 안 되면 저는 4기 무조건 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간단한 문제다. 그래서 1기 아니면 2기를 준용해서 조사기간을 상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1기·2기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이슈들,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의원님은 고엽제 이런 것을 새로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고엽제 그것 보니까 아까 미제 2116건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고엽제 피해요?

○고동진 위원 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기·2기 진화위 하는 동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3기에는 이런 것을 넣어 달라고 하면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입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슈를 다루자 할 때 진화위에서는 의원들이 입법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다루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건지, 의견이 뭡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지금 정부 측 답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동진 위원 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저희가 판단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법 2조에 조사 대상이 딱 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사 대상인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어떤 사건은 포함된다라고 하면 조사개시 결정을 하는 거고 안 그러면 각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실은 예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2기 위원회의 경험을 보면 사실 2기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예상하지 않았던 유형의 사건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 사실 2기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되고 사회적 관심이 환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향후에 조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신청들이 다수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입법 과정에서 다루어지든 안 다루어지든 위원회 구성이 돼서 거기서 또 토론이 되고 이슈화가 되면 얼마든지 다루어질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러니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사대상인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고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관련해서, 연관되어서 조사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언제까지로 돼 있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게 사건 유형별로 다릅니다만 이른바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소위원장 윤건영 인권위원회 구성 전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라고 법이 되어 있고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시민단체나 아까 말했던 집단시설 쪽에서 희망하고 있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 아닙니까? 권위주의 정부와 인권위원회 구성 그 사이가 뜨니까, 공백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진화방법이 만들어진다면 포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주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 내에서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거나 어떤 합의된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어보시니 그에 대해서 짧은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권위주의 통치 시라고 하는 것이 좀 명확지 않은 개념이어서 그에 대해서 해석을 두고 1기 또는 2기 위원회에서도 사실 여러 의견들이 있어 왔었던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현재는 2025년인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가 아마 2001년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논의가 되었을 때는 사실 시기적으로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25년이기 때문에 벌써 25년이 지난 사건들도 많고, 예컨대 90년대 사건인 경우에는. 그래서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사법적으로는 소멸시효나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검토하셔서 정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이 없으면 전문위원께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쟁점이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 자료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의원님 안과 이훈기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안에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탄핵 소추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헌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원회의 특성과 유사 위원회의 위원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탄핵 규정을 입법화한다면 위원 결격사유에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나와 있는 대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는 거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소위원장 윤건영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짚으신 거고 앞서 이성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야 간에 첨예하게 쟁점이 부딪힐 때 그리고 위원장의 검증 부분, 인사청문회와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 같습니다. 혹시 이것을 포함해서 오늘 진화위법 전반에 대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위법은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리뷰를 했고요. 오늘 크게 네 가지 쟁점, 추가로 해서 다섯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 쟁점 이외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진화위법이 분량 자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우리 법안소위 할 때는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걸로 하고 그 이전에 최대한 정부 측과 전문위원이 협의를 해서 쟁점이 없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법안 처리하는 데 조금 더 신속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진화위법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8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지금 여러 쟁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2기 진화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건이 넘는 사건을 결론을 못 내고 조사 중지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도 내부적으로 피해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이고. 그래서 많은 대내외의 그런 요구가 있고 지금 현재 11월 26일이면 2기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이런 추가적인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속한 입법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절실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춘생 위원 잠깐, 질문이, 가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생 위원 탄핵소추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은 전 진화위원회장이……

○소위원장 윤건영 현 진화위원회장.

○정춘생 위원 현 진화위원회장이 진화위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언행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탄핵소추는 헌법에 그 대상이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 법으로 규율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문상 내신 분이 국회법에도 아마 같이 내신 것으로……

○정춘생 위원 아니, 탄핵소추 대상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추가로 검토해 주시면……

더 이상 진화위법 관련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 전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법안심사 순서를, 원래는 다음번이 주민자치회법인데 순서를 좀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식 위원님께서 꼭 자기가 있을 때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마을기업하고 국가트라우마를 먼저 하고 주민자치……

○이성권 위원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저 있을 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소위원장 윤건영 이 순서대로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아니요, 저도……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이 순서대로, 왜냐하면……

○이성권 위원 아니, 그러면 이상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부산 것 하고 전북, 제주하고 이렇게 가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마을기업부터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 마을기업 하고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을기업, 국가트라우마센터, 거창 순서대로 가고 주민자치법 맨 뒤로 빼게요.

○이성권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소위원장 윤건영 주민자치법을 맨 뒤로 빼고 글로벌법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이성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상식 위원님에 대해서 배려……

○이상식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해식……

○이성권 위원 아, 이해식 위원님이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그러니까 이해식 위원이 와서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법을 맨 뒤로 빼겠다고요.

○이성권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마을기업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이성권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5항까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괄적 검토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정식으로

추진되어서 현재 18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법이 없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이 곤란하고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근거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제정법안들은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청회 요지와 마을기업 육성사업 개요들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수의 제정안들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어서 부처 제출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2개 부처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하고 그 조정한 결과를 저희 수정안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내시고 대부분 20개에서 2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통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기업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두고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설립·지정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구성체계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5쪽, 제명 및 목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들은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마을기업지원법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각각 제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간결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볼 때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편적인 제명을 택하는 게 좋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 목적 규정입니다.

목적 규정에 지역일자리 및 소득 창출,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지역소멸위기 극복,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 등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을기업 육성의 특성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역일자리 및 소득 창출,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목적 조항에 담아서 17쪽 수정 의견 제1조(목적)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정의 규정입니다.

제정안에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정의를 두면서 제정안별로 마을, 마을주민, 청년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나 사용빈도가 높거나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 정의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마을기업과 마을주민에 대해서만 정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안에 반영하였고 22쪽과 23쪽의 수정의견 조문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마을기업의 역할과 의무 등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정안들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고 박정·이성권·정동만·신정훈·조승환 의원님께서는 마을기업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달희 의원님 안에서 마을주민 및 마을기업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마을주민의 역할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마을기업에게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에게 금전적 투자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해서 정동만·신정훈 의원님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정도로 위딩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26쪽·27쪽 수정의견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28쪽 종합계획 및 시도계획입니다.

제정안들에서는 각 명칭은 조금씩 상이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기 불일치와 업무 혼선, 행정업무 과다 등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시도에서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처의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조문은 30쪽에서 37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실태조사 조항입니다.

제정안들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마을기업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주기와 의무 도입 여부, 결과 통보에 대해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의원님 안이 2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의무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서 수정안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에, 시·도지사가 시도마을기업육성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위원회들이 자문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결과 통보 제도는 두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위원회 규정입니다.

제정안들에서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에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다른 정책전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44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단서를 통해서 다른 정책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조항입니다.

마을기업의 지정 규정 중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세제·재정 등 지원을 받는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중복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있습니까만 지정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지정은 하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정안에서 지정된 이후에 마을기업과 시군구청장과 마을기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규정은 집행상 세부 절차로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운영상 자율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수정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마을기업의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인데요.

약간의 내용들이 상이하나 56쪽의 수정의견 조문을 보시면 보조금 관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보조금 외에 간접 지원되는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로 워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고요.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자는 안과 관련해서는 예비마을기업이 마을기업 지정에 있어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집행상 신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도 있고 참고로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저희 수정안에서도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59쪽 마을기업의 사업 부분입니다.

박정 의원님, 이성권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조승환 의원님께서 마을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법률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마을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어서 수정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크게 두 카테고리입니다.

먼저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제정안들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사회보험료의 지원 그리고 마을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사항 규정은 관계부처에서 이견이 제시되어서 수정안에는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64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청년참여 마을기업 우대는 청년마을기업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취지가 긍정적이어서 제안안들과 같이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부분입니다.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지원기관이 마을기업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좀 과한 면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서 반영치 않았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마을기업의 날 및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에서 마을기업의 날과 마을기업 주간을 마련하고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동 조항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수정안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74쪽 마을기업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기관, 마을기업협회 등의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마을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두는 건데요.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기업지원센터를 두기보다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마을기업지원센터는 수정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협회는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포상 및 감독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독 근거를 두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수정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보칙 및 벌칙 사항인데요.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그리고 동일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과태료 규정 등인데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조항들이어서 일부 자주 수정을 해서 수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입니다.

94쪽입니다.

부칙 제정안들에서 법률의 시행일과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과 공포 후 1년 등으로 나뉘는데요.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면에서는 1년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지원기관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는 마을기업과 마을기관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 위한 경과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반영하고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마을기업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임을 분명하게 해 주기 위해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에 다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듣기 전에요 법안 상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안 해 가지고.

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11)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9)

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7)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8)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57)
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4)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3)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5)
39.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
40.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
41. 마을기업지원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9)
4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3)
43.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1)
4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0)
4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9)
46.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1)
4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4)
4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7)
49.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1)
5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7)
5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09)
52.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11)
5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5)
5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9)
5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0)
5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1)
5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13)
5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105)
5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1)
6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3)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1)
6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6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6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6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6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70.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현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15시44분)

○**소위원장 윤건영** 행안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총 4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마을기업은 읍면동과 같은 동일 생활권 내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업 활동으로 특히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게 11년부터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태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이 돼 오다 보니까 마을기업 성장과 발전에도 제약이 많았고 또 안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준 제정안과 또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견이 없는 상태로 지금 제정안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하고요, 이게 19대 국회부터 추진됐던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 잘 협의하셔서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오늘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안은 여기 보니까 전부 행안부하고 직접 의견 개진해서 거의 퍼펙트하게 수정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거는 다 입법이 되어 있어서 지원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마을기업은 약간 기형적으로, 사회적기업 측면이 있는데 입법이

안 되어 있어서 기재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올해처럼, 예비적기업이 쭉 성장해 오고 이 예비적기업이 마을기업에 지정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경주에 마을을 비워서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숙박업을 하는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마을기업에 선택이 되어야 국내 관광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면 외국인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되어 있어요. 투자를 마을 사람들 이 빙집을 다 활용해서……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입법 근거가 없어서 기재부로부터 항상 찬밥 신세였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이번에 오늘 이 입법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지역에 가 보면 마을 단위로 면 단위로 그 지역에 특화된 재원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외부 생활인구 유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오늘 이 수정안이 채택이 다 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인구소멸지역에 아주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이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거는 뭐 크게 반대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11년도부터, 언제부터 시행이 돼 왔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011년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 1800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라는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이게 운영돼 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법률로 해 달라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계속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걸 줄여 오니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시도에서 먼저 예비마을기업을 선정해서 1000만 원씩 매년 1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상식 위원 진짜 마음속에는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물어봐도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마을기업을 해 가지고 성공 사례나 이런 게 종종, 자주 나타나는 모양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럼요.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 중에 생존율이라 그러니까요?

○이상식 위원 이게 제일 높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5년간 된 게 89%나 됩니다.

○이상식 위원 가장 주요한 업태가 어떤 겁니까? 숙박이나 무슨……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여기 6쪽에 보시면 제주 마을기업 우수 사례를 하나 넣었는데요. 제주에 가면 제주도가 메밀이 많이 나더라고요. 메밀이라든지 뭐 과일 같은 거, 한라봉 이런 거 있으면 카페를 만들어 갖고 음료 만드는 걸 체험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메밀로 해서 빵도 만들고 식당 같은 걸 해서 제주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먹고 이런 걸 하는 거 있고 또 농산물 같은 걸 각 바구니에 만들어서 주문하면 마켓컬리처럼 보내주고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게 법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나 소상

공인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거 관련된 법률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거기하고 중복되거나 저촉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부 중복될 수도 있지만요 저희는……

○**이상식 위원** 일부 중복이 되면 추가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게 대원칙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게 다른 법에 의해서 큰 사업비를 받게 되면 마을기업을 그렇다고 취소하지는 않고요. 저희 지원책이나 이런 데서는 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런 커다란 중복 지원은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까 마을기업 지정의 요건 네 가지인가 제가 어디 읽어 봤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다 해당이 됩니까? 네 가지 기준인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저희가 설립 요건을 지역성, 같은 지역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라고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100%는 아니더라도 같은 마을에 사는 분들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멸에도 좀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이게 여기도 있었지만 공공성을 떠니까 너무 비싸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또 수익구조가 결국 있어야 됩니다, 수익 창출이. 그래야 운영이 될 수 있고 5년 지나면 저희가 뭐 모두애(愛)라든지 또 우수마을기업은 포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새마을금고, 마을금고라 그럼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지요? 새마을금고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상식 위원** 새마을금고도 행안부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상식 위원**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의 성격을 갖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방의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차관님, 업무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감 같은 거 해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엔 마을기업도 취지는 좋은데……

○**정춘생 위원**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상식 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이달희 위원** 다릅니다.

○**이성권 위원** 그거는 금융기관이지.

○**이상식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지원은 하되 간접은 안 하는 창의적인,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 한번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모경종 위원님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이성권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모경종 위원** 차관님, 지금 청년마을기업 운영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마을기업 1800 중에 또 청년들 중심으로 된 마을기업도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87개가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지금 청년마을기업에 대해서 행안부가 흔히 말해,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를 잘 못 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마을기업 법안에 이 청년마을기업에 대해서,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균형,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서이고 그 이면에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는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제로써 이 법안이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안 내에서 지금 행안부가 생각하기에 청년마을기업, 마을기업 내에서의 청년 관련된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 그 제정안에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문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조문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사회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제 막 진입을 하는 청년들이 이 마을기업을 더욱더 다채롭게 하고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게 우대를 해 줘야 이 법안이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시고 이달희 위원님.

○**이성권 위원** 저는 뭐 30초만 말씀……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부산을 지역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부산이 대도시라고 해서 인구소멸과 무관한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부산 안에 사실은 인구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을기업들이 지역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상당히 저는 소멸 위기를 좀 더 늦추거나 완화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조문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나 행안부 입장도 거의 다 대동소이 똑같기 때문에 큰 토론이 많이 필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빨리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모경종 위원님 저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앞으로 시행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조부모의 한과 솜씨를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청년이 한과 회사를 마을기업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청년이 떠나지 않는 거지요, 그 지역에서 사업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른들 이름 전부 넣고 본인 이름 넣고 해서 마을기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시킨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있는 곳에 가산점을 좀 더 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활성화 좀 시키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인구감소지역과 청년참여 마을기업 우대 조항을 그래서 저희가 넣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비율도 높여 주고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령이 됐든 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이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나요,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이제……

○**고동진 위원** 아니면 어디 위임을 하는 건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담당 팀이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도나 시군 구에도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거기서 신청을 받고 컨설팅도 해 줘서 우리가 마을 특산품이나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자본과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초기 1년, 2년, 3년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면, 큰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요.

공청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좋은 거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게 되면 특산품을 담례품으로 줄 때 이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거나 이런 부분을 좀 연계시키면 또 좋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도 이거를 지원하는 인력과 조직이 있고 각 지방에도 다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에는 현재 중간 지원센터가 있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특히 청년들이 마을기업에 관여를 하면 가산점도 있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런 기업을 운영하면 또 가산점이 있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그걸 금전적으로나 어떤 행정적 경영에 대한 것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부탁을 하나 한다면, 특히 일본이 이러한 유사한 거를 꽤 오래전에 해 왔어요.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지방이 인구 감소해서 빈집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지방의 빈집하고 이거를 또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마을기업을 하는 데 수리비도 지원한다거나 이런 일본의 행정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빈집이라든가 특히 청년 내려오는 거 이런 모든 걸 다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중앙부처하고 지방, 행안부 담당하는 분들이 특히 이런 거, 여태까지 우리가 시범 사례로 해서 아까 천몇백 개가 운영된다고 그러니까. 특히 가까운 일본 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벤치마킹돼서 좀 더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그렇게 추진 과정에서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채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전국에 1800개 정도의 마을기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재정지원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70억이었는데 최근까지 16억으로 떨어졌고 그 이유가 입법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였나요, 아니면 긴축재정, 아니면……

제가 찾아보니까 행안부 입장은 전국에 마을기업이 1800곳이 됐고 5년 생존율도 70~80%가 돼서 양적 성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마을기업을 신규로 하는 건 필요 없고 컨설팅이나 홍보,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입장이 지금도 그래도 똑같은지? 그러면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되면 기존 입장하고 다른 건지, 아니면 재정지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지…… 어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부분은 같은 정부 내지만 의견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1차, 2차 되니까 기준에 지정됐던 것 컨설팅해 주고 후속 지원해 주는 예산만 좀 반영이 된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올렸었는데 그 부분도 현재까지는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가장 큰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과가 있다라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인용을 잘 안 해 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이게 마을기업 관련 법으로는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회적경제기본법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현일 위원** 예, 사회적경제기본법.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

○**채현일 위원** 그와 별개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 뜻은 병존 가능하고요. 지금도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다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논리가 될 수 있는데 더 시너지 효과를 두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건영** 예,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제가 현장의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도에 가면 마을기업협회에 소속돼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사회적기업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이런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 기재부가 지원하는 것, 복지부가 지원하는 자활기업 이런 여러 기업의 작은 소규모, 우리 전체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센터가 같이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마을기업만 지금 지원 근거가 없어서,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죽 해 오던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작년부터 지원금이 단절되니까 가다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죽 이렇게 오다가. 지역에 내려가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5개를 다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가 있다고 한 과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같이 지원하는데 그런 형태가 다 다른 거지요. 비슷비슷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의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만 쉬지요.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0항까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5건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의 안 중 마지막에 들어온 전진숙 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개정안들은 작년 11월 27일 소위에서 이미 심사한 바 있습니다.

소위 논의 결과는 별지로 저희가 배부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4건에 대해서는 소위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전진숙 의원안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위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의 개정 내용은 국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피해를 국가폭력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한 것인데 개정안은 여기에 불법적 행사 또는 불행사로 ‘불행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을 통해 치유센터의 범위가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사회재난 등까지 확대되어 사회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재난 등에 의한 피해를 치유하는 것이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동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개정안에 따른 공권력 불행사의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사회재난 등에 의한 피해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5쪽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개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건까지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끊어서 갈까요?

○전문위원 조문상 이 건은 다른 안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은 다 듣고 이야기할까요, 하나씩 이야기할까요?

○**이상식 위원** 다 듣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문상** 이어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했었던 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별지를 보시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의 건수로 치면 총 6건입니다.

6건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삭제하고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 의무화로 변경하고, 책무 규정의 지원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현행은 출연·보조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 되어 있고 출연·보조는 재량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책무 조항의 지원 주체 역시 국가 또는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출연·보조 주체를 모두 국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거고, 출연·보조 의무 여부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안·정춘생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재량으로 하되 양부남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님 안은 이것도 의무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책무 조항의 지원 주체에서 정춘생 의원님 안만 지자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첫 번째, 출연·보조 주체에서 지자체를 삭제하는 여부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당시 소위에서 나왔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전액 국비, 이게 국립 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 편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불필요하다는 이유는 동 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출연·보조 저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 의무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동 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전액 국비 편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화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수의 입법례는 출연·보조에 대해서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위성곤 의원안은 출연·보조 주체를 국가로 하고 국가의 출연·보조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2페이지의 안 17조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방법 명확화 등’이라는 주제의 항목을 보시면 치유센터의 운영 재원으로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이런 것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연·보조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시고요.

책무 규정의 지원 주체에서 지자체 삭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출연·보조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이 개정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근거 마련하는 것 관련해서, 현재 광주는 본원이고 제주는 분원 형태로 지금 법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동등한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와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를 각각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동격의 법인으로 운영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만약에 이것을 할

경우, 각 지자체마다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전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행안부는 역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설립된 광주와 제주 센터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광주 센터와 제주 센터로 본다는 부칙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내용은 소위 자료 15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별 치유센터 설립 근거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치유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김한규 의원안과 정춘생 의원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안을 합한 수정대안을 12쪽에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에 따라 분원 설치·지정·운영 등과 관련해서 현행 분원은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위성곤 의원안은 이것을 정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만약 전액 국비로 트라우마치유센터가 운영될 경우 관리 감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행안부 역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그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와 관련해서 현행에 플러스해서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혐의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안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서 이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고요. 또한 이 자체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현행과 같이 그냥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린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방법 명확화인데요.

치유센터의 운영 재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시키고 그때 출연·기부 가능 18조 조항도 역시,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 출연 및 기부가 가능하다고 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은 입법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양부남 의원님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의원님 안들은 6개월부터 하는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그때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 삭제와 관련해서는요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시키려고 계속 노력은 해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볼 때

는 국가재정 책임만을,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지 못하게 한다면……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산의 형제복지원 관련해서도 부산이 50% 낼 테니까, 부담하고 트라우마센터를 부산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전남 같은 경우도 여순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50% 정도,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걸 저희한테 의견을 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국가 출연·보조 의무화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당초 소위 자료에 있던 전문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전부를,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저희가 볼 때 국가가 다 부담하게 하고 사업비에 한해서는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아예 지원 주체에서 삭제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하고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로, 지금 현재는 법 자체는 분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주에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셨던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의 체계를 적용한다면 이사회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두 배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치유센터 설립 근거 마련은 저희는 이 부분은 6조로 옮겨서 같이, 등기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역센터 설치는 6조(분원의 설치 등)로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관에 따라 분원 설치·지정·운영은 저희가 또 중간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지역별 광역센터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6조가 분원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임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되는 분들은 없고 전 정부에서 좀 우려했던 측면이 있지만 현재 이런 부분은 결격사유가 명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방법 명확화 등 이 부분은 저희가 큰 이견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정춘생 위원님 말씀 전에, 지금 부처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운영비는 국가 지원,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걸로. 그다음에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방법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다 이런 등등이 있어서 그런 것 참조하여 가지고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정춘생 위원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근거 삭제안을 낸 의원의 입장으로서 질문을 드릴게요.

형제복지원 사건하고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성격이 같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크게 보면……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부산에서 50% 예산을 할 테니 국고에서도 50% 지원해서 트라우마치유센터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마저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법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정춘생 위원 그리고 그것이 제주에서 벌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아니면 광주에서 벌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그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까,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인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아는데요. 예를 들어 형제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고 그것도 크게 광의로는 국가폭력으로 보는 데 진화위에서 결정할 때 국가의 책임과 그 당시 부산의 책임 이런 것을 같이 묻고 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을 때.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4·3하고 5·18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대다수의 피해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고 지금도 계속 치유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게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인 겁니다. 이 지원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절반을 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자체의 책무를 삭제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법률로 풀기보다는 예산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 거고, 이게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고 이것 설립할 때부터 저는 국장일 때 관여를 해 왔습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의 단일안을 낼 때는 재정 당국에서 이것을 저희가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동진 위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할 때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물론 멀게는 4·3사건 그다음에 5·18, 형제복지, 여러 사건들이 각 지역별로 있었는데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본인들도 해당되지만 대부분 가족, 그 가족의 범위도 사실은 일가친척일 수도 있고 직계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센터라고 하는 게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 지역에다가 꼭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각 지역별로 흩어지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다음에 최근에는 각 지역별로 행안부에다가 우리 지역에다가도 이런 것을 운영할 계

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으면 예산을 우리가 적어도 운영비는 모르겠으나 사업비는 50% 지원할 용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의 검토안대로, 이런 트라우마센터나 이런 것을 지역에서 운영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정부가 대더라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는 꼭 원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기보다는 효율을 따진다면 현재 제주도에……

예산 규모라든가 광주하고 비교해 보면 광주가 훨씬 더 크지요, 예산이? 어떻습니까?

○정춘생 위원 예산은 광주가 많고요, 피해 대상들은 제주가 많고.

○고동진 위원 훨씬 많지요? 그래서 조직의 운영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광주나 이런 것을 원으로 해서, 나머지는 분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인건비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부 검토안에 대해서 잘 검토된 내용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안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이해가 진짜 잘 안 갑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따로따로라는 게……

○이광희 위원 아니, 5·18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전혀 다른 내용이고 제주도 4·3도 전혀 다른 내용인데, 제주도 4·3이 규모나 대상자가 훨씬 더 큰데 거기가 본원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광주가 본원이고…… 트라우마센터의 특징이 굳이 그렇게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되면 될 것 아니에요?

청주에 오송트라우마센터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거기도 또 따로 생기면 되지 광주 5·18 트라우마센터 분원 오송트라우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설명을 자꾸 하시는데 진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법안의 문제면 생길 때마다 법 넣으면 되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 유일하게 그러시는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고동진 위원님께서…… 예산 규모는 광주가 5 대 5 합친 게 22억 정도고요, 연간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그리고 제주가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하자고 해서 설립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갖고 추진을 했고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신 겁니다, 행안부는 그것을 서포트했고. 그런데 그때 결정을 내린 구조가 광주에다가 본원을 놓고 그다음에 제주는 분원을 놓는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광주 쪽에 사람이 더 많았고 제주는 이게 벌써 한 70년 전 일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돼서 설계가 됐고, 나름 제주나 지역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차질 없이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 그런 부분은 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을 하다 보니까, 작년 5월 말, 7월 1일 자로 출범을 했을 때부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해서 이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바꿔 드렸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 이제 1년 됐고…… 또 그 전에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시범운영할 때 5 대 5로

매칭해서 했는데 그때는 그런 문제 제기가 크게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게 만들어질 때 이태원도 세월호도 그 이전에 얘기가 됐다가, 그런 사회적 참사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서라도 지역마다 아마 트라우마센터는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국가폭력이든 아니면 사회적 참사든 이렇게 됐을 때 살아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선행이 돼야 된다는 의미로 애초에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어디가 본부고 어디가 분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돈 문제면 스케일이나 규모에 따라서 돈 예산은 그때그때 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이해가 안 갑니다.

○고동진 위원 이게 제도 운영한 지가 한…… 저도 알고 있기로 이제 1년 막 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전까지는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고동진 위원 시범운영하고 해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도 보면 트라우마센터라고 하는 게 꼭 무슨 사건을 딱 집어 가지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로컬의 병원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특히 월남전…… 미국은 전쟁으로 온 병사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트라우마센터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상담치료를 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개념으로 가져간 게 아닌가 싶고, 실제 운영된 게 1년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보고 판단해도 안 늦지 않나 싶네요.

○이광희 위원 어쨌든 저는…… 일단은 오늘 트라우마치유센터법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분원을 둔다 이런 건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다음으로 넘겨도 되는 문제고, 어쨌든 여기서 얘기가 돼서 한다면 저는 제가 굳이 이렇게 분원이다 뭐다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트라우마센터법이 통과되는 게 우선적인 거 아닌가.

○고동진 위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저는 7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 삭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차관님 답변할 때 5 대 5가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저는 들었고 부산의 형제복지원의 경우는 조사 이후에 그건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부산시도 책임이 있다라고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사례로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의 시기에 부산시는 중앙정부입니다. 지금처럼 민선과 지방자치가 돼 있는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임명한 그야말로 그냥 중앙정부의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그걸 지금 행정적 기준으로 따져 가지고 5 대 5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못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산시가 트라우마센터를 만드는데 중앙정부에다가 5 대 5를 먼저 얘기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그건 너무나 잘 압니다만 트라우마센터를 꼭 만들고 싶어서,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반이라도 내겠다 그런 측면이 좀 깔려 있었던 것이고요.

그게 불거진 이유가 뭔가 하면 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할 때 형제복지원의 피해자인 최승우 씨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만 국회에서 농성을 2년 가까이 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정받고 난 다음에 국가권력에 의해서 아무런 보상·배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지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최승우 씨라는 분이 부산 광안리에 있는 광안대교라는 그 대교 위의 난간에 올라가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가서 설득해 가지고 내려와서 요구사항을 듣고 죽 진행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국가권력이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 부산시는 그때 일시적 위로금 드리고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요. 트라우마센터를 그렇게 얘기한 이유도 중앙정부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5 대 5는 말이 안 되지요. 국립으로 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5 대 5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빨리 트라우마센터를 해서 형제복지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치유해 드리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오해하실까 봐 부연설명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그런 의견은 같이하는데 다만 제가 예둘러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결정이 된 그런 목소리, 예산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 굉장히 높은 비율의 국비 지원을 한도 내로도 세웠거든요. 그런데 50 대 50으로 됐고.

기재부에서 그 이유는 첫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의무 규정을 듣 게 있고요. 과거, 지금 있는 다른 것도 대부분 다 5 대 5로 매칭하고 있다, 이것 하나를 해 주면 다른 데도 전부 다 비율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립국가폭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법률명 자체에. 이건 그때 입법 취지 자체가 국가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한 거라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 당국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조금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달희 위원님.

○**정춘생 위원** 차관님,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책무로만 할 경우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는 그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그렇게 걱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복지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게 아니고 국가폭력으로 행해진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접근에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착시가 있는 게 광주…… 사실은 제가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제주국립트라우마센터를 한번 갔었어요, 시범운영할 때. 가 보면 굉장히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춘생 위원** 오히려 더 많습니다, 광주보다. 그리고 피해 유가족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런 치유센터가 생겨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건강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런 치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계속 늘어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과거 국가폭력으로 행해진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국가가 어떻게 치유와 지원으로 책무를 다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지자체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출연·보조에 있어서 국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한 거기 때문에 이 법을 하더라도 지자체가 사업성으로 뭘 한다고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행안부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정춘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보편복지 하면서 수십조, 십점몇조씩 막 쓰면서 지방에 있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걸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돈 22억…… 작년에 22억 썼습니까? 그중에 운영비가 얼마쯤 들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건 절반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22억은 광주 분원을 올해 운영하는 데 드는 거고요. 작년은 하반기부터 6개월만 운영했기 때문에 22억입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올해 22억 배정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데 국비가 11억, 지방비가 11억.

○이달희 위원 이 중에 행안부에서 준 건 11억이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22억 중에 운영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는 얼마하고 운영비는 얼마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운영비는 12억 5000만 원이고요. 왜냐하면 광주는 원장하고 이사회 이런 부분을 운영해서 조금 더 들어가고요.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걸 2분의 1로 나누시면 되고 제주는 12억 5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입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흔히 우리가 국립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나라에서 100% 다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정치권, 지자체…… 국립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께 합의도 모으고 또 가서 홍보도 하고 국립 무슨 무슨 센터, 국립 뭐 하나 유치하면 현수막이 수십 개가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달랑 22억 이 부분 가지고 행안부에서……

특히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센터인데 제주를 분원으로 안 하고 따로따로 해도 될 것 같고 한 팀, 행안부에서 안전 그리고 이런 국가폭력에 의한 센터 지원하는 팀 하나 정도만 있으면 각 센터 다 두고…… 지자체가 사업은 다 같이 와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운영비 전액 국비로 하고 사업비 중에도 5 대 5보다는 그냥 쓸데없는 사업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그 비율을 8 대 2 정도라든가, 국고에서 전액 했으면 좋겠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사업에 경직성도 조금 주는 의미에서 8 대 2 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의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비가 우리나라 전체, 행안부 이번에 추경한 예산을 생각하니까 정말 쓸데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동의합니다. 저 안으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45만 원 주지 마세요.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금 고민이 됩니다. 부처에서는 운영비는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자체가 50 대 50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위원님들은 조금 결이 다른 데 당연히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거고 사업비는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8 대 2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정춘생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등은 사업비조차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립트라우마센터다라는 말씀이시고 고동진 위원님은 ‘아니다,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결정하기 어려운데 잠깐 정회하고 의견을 모아서 바로 처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5분이라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공감대를 모아 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정리된 내용을 보고드리면요, 별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행대로 유지하되 ‘운영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 또는 자체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방안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협행 유지입니다. 각각 별개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협행대로 하되 단 제6조의 ‘분원의 설치’라는 명칭을 ‘광역거점센터’로 바꾸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별 치유센터 설립 근거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6조의 제명을 ‘광역거점센터’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의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는 협행 유지,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방법 명확화 등은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전문위원님께서 논의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0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추가로 부대의견을 부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 문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안건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 다 신성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데요.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지금은 사망자만 관련자로 되어 있는데 행방불명자, 상이를 입은 자까지 포함해서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전부개정안의 구성을 보시면 현행 조문은 8개 조문으로 아주 단순한데요. 이것을 타 법의 예를 따라서 보완하면서 총 28개 조문으로 개편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이들의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5쪽의 주요 사항부터 제가 전체를 간략히, 이게 핵심은 보상금을 지급하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제정법이니까 일단 일독을 한번 쭉 한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명입니다.

5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제명을 현행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이나 여수·순천 사건 등 관련 법이 모두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제명에 보상 부분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제주4·3사건법은 보상 내용이 있지만 제명에는 보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개별 입법례 모두가 희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의 ‘관련자’ 용어를 ‘희생자’로 변경하고 보상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6쪽에 제시하였습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2. 목적 조항인데요.

목적 조항에서 기존 대상자를 상이를 입은 자 그다음에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보시면 행방불명자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목적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실질적인 보상’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제주4·3사건법 등 예를 반영해서 ‘보상’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정의 부분인데요.

현행은 거창사건 등의 정의를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과거사법들이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단 부분을 보시면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부분은 그대로 두되 뒷부분을 현행 규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쪽입니다.

15쪽은 위원회 관련 내용인데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 제목에 있는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그 안의 1항에 나와 있는 위원회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과거사 입법례에 따라서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통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입니다.

이 부분은 사소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인데 동조 제7항에서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위원회의 활동 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관련된 제7조제1항에 ‘호적부의 손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법에서는 ‘피해로 인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 부분을 ‘피해로 인하여’로 수정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입니다.

피해신고처의 설치 역시 마찬가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9쪽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사망·행방불명자 유족에게 최대 1억 4000만 원, 상이를 입은 자와 유족에게 최대 1억 4000만 원 정도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5·18민주화운동이나 제주4·3사건 등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타 법에 보상금 한도액이 있습니다. 제주4·3사건 같은 것은

9000만 원인데요. 이를 참고하여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좌측의 표를 보시면 현재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건과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건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이 법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840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1인당 보상금 최대한도 1억 40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1998년에 나왔던 희생자 934명을 곱하면 약 130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금과 같이 연계돼서 검토될 부분인데 다만 여기서 지금 다른 유사 사건의 경우에는 희생자에 한해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부개정안에서는 유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만약에 지급 대상이 타당하다면 희생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9쪽입니다.

조세 면제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법률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사실 조세 면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정 실익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4쪽입니다.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지만 제23조제1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라는 표현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검증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입니다.

기탁금을 거둬 가지고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였지만 우려되는 점이 기탁금품 기부행위가 공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회가 참여하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쪽입니다.

추모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다 있는데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거창군과 산청군이 위령행사·추모공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추모사업을 의무화하거나 관련 비용을 전부 지원한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추모사업과 재정지원 시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성범 의원안을 수정해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별칙 부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위원 검토 정도까지만 보려고 했던 거라서요, 부처에서 총괄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법안은 앞서 진화위법 등등 포괄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 정부 의견도 좀 더 다듬어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차관께서 총괄 의견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전면개정안에서의 핵심은 보상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여부가 되고요. 만약에 그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면 그 뒤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는 저희는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29쪽을 보시면 여기도 기획재정부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통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회적 공감대, 보상 규모의 예측 가능성, 국가재정 여건 등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신중검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1억 4000으로 한다 그래도 1300억이 넘는, 130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9쪽 다시 보셔도, 그러면 여순이라든지 노근리, 거창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배·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다 감안 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동 법안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재정 당국하고 좀 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법안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대로 두고요.

원래 애초에 오늘 쪽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제 시간도 그렇고 저녁 시간도 되어 오고 그래서 오늘 법안심사는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법안……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마치시려고요?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이성권 위원**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섭섭하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성격적으로 그렇게 쉽게 흥분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지금 흥분하고 열받은 걸 억제한다고 되게 힘들거든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이 행안위에 와 가지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5월 31일에 발의가 됐습니다. 여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발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3개월 뒤인 9월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오늘 법안심사소위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지금 논의

도 못 했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게 1년 2개월 만에 됐습니다. 이게 무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자체가 어디서 주워 온 자식도 아니고 무슨 혐오 법안도 아니고 선입선출이라는 국회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논의가 끝난, 보고가 끝난 거창사건 이게 지금 발의가 언제 됐습니까? 지지난주 아닙니까? 행안위 전체회의에 지지난주 상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 바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지금 의견 듣고 다 했거든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한번 보자고요.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발의하고 난 다음에 두 달 만에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해 갖고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소위 원장으로 계시는 윤건영 위원장님의 간토법 날짜를 제가 봤거든요. 작년 11월 20일 전체회의 상정이 됐고 27일 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바로 공청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 도대체 질서가 어디로 간 겁니까? 부산이 뭐 잘못했습니까? 이 법이 문제가 있으면 내용을 검토해서 문제 지적을 하면 되지 왜 논의도 안 합니까?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건 정당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요, 이유라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저요, 농담 아니고 진짜 목숨 겁니다. 이것 국회가 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도무지 진짜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고동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짧게 해 주십시오.

○모경종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1소위에 올라온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 못 다룬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법안은 최대한 빠르게 소위를 다시 열어서 이 회의의 연속성을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법 말고도 다른 법안들도 지금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으니 그 법안들을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여야……

○고동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이것이 이렇게 뒤로 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지금 행안위에 밀려 있는 법이 1000개가 넘습니다. 빨리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성권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에 우선순위가 이게 먼저 들어가는 것 맞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잘 아시겠지만 여야 간사 협의를 해서 법안을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

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고동진 모경종 박수민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혜식 정춘생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